

●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12호

개선권고 재결

2025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06일

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-12호(개선권고 재결공고[인천해심 제2025-063호
(낙시유선 은아호, 부산 성우201호 충돌사건)])**

사 건 명 : 낙시유선 은아호 · 부산 성우201호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성*** ****(***** : *****-*****)

인***** ** ***** **, **(****)

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산 성우201호가 2024. 11. 2. 06:23경 인천항 A-9 묘박지 해상에서 정박 중 항행 중인 낙시유선 은아호와 충돌하였습니다.

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은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성우20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, 성우201호가 정박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항계 내에서 정박 중인 귀사 소유 선박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사에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